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160230 [정보공개서 최초등록일] 2016.03.17. 037201kah@naver.com

# [산주막]

#### 정보공개서

[산]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산]

####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 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 거래위원회 또는 시 · 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 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유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 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 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사무소의 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달삼로 18, 1층(달동)] [가맹본부 대표전화 및 담당부서 전화 : 052-221-9200]

#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CANCE 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 VⅢ.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 별첨서류

[별첨1] 별지 제1호 서식: 가맹금 예치 신청서

[별첨2] 별지 제2호 서식: 가맹희망자 인근의 가맹점사업자현황

[별첨3] 별지 제3호 서식: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

[별첨4] 가맹본부 재무 증명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 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 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 랍니다.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알림마당'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 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 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산주막 울산광역시 남구 달삼로 18, 1층(달동)					달동)
 산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대표팩스번호
신	개인사업자	2016.01.20	김일중	052-221-	2-221-9200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351-31-0				1-31-00159

####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_	
_	해당없음	_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	_	_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 · 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해당없음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없음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산주막]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산주막	

상 호	산주막 00점	
서비스표	人,平时	서비스표 등록번호 : 41-0381509
광 고		
그 밖의 영업표지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272,148	216,839	55,308	521,713	25,295	24,457
2022년	359,420	233,694	125,725	1,169,005	24,689	31,679
2023년	381,315	306,049	75,265	1,152,152	71,588	68,482

<sup>※</sup> 별첨 참조

## ※ 2023년 내역

TO 1	e mangalla e mangalla		对	7.			对	0
Banna		0	O	1	Hur j	napaniibanaa	O	Hanne Hanne

점포	연도	KOREA 자산총계	FAIR TRADE 부채총계	MEDIATION / 자본총계	AGENCY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가맹본부(달동 직영점)	2023년	328,265	304,301	23,963	772,418	16,656	9,852
삼산사동직영 점	2023년	53,050	1,748	51,302	379,734	54,932	58,630
합계	_	381,315	306,049	75,265	1,152,152	71,588	68,482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1)과 같습니다. ※ 별첨 참조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라시H	시민	취기이	사업경력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김일중	대표	2016.01. ~ 현재	대표	가맹사업 총괄		
관련 임원	72 2 6	네됴	2010.01. ~ 원제	네표	기 8 시 B 등 글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	누(명)	직원수(명)
八名	상근	비상근	주천구(경)
*2023년 12월 31일	1	0	7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산주막 외에 운영하는 가맹사업은 없습니다.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일자	등록 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산주막	서비스표	2016.12.23	41-0381509	김일중	2026.12.23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 Ⅱ. 가맹본부의 [산주막] 가맹사업 현황

1. [산주막] 를 시작한 날: 2017년 07월 04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2016년 1월 20일)

#### 2. [산주막]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산	산주막	김일중	2017.07.04. ~ 현재	울산광역시 남구 달삼로 18, 1층(달동)

#### 3. [산주막] 업종

영업표지	업종		
산주막 -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신구덕	주점	탕류, 찌개류, 동동주와 막걸리	

##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산주막]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	2021.12.3		5 6 -2	022.12.3		2	2023.12.3	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3	1	2	3	1	2	3	1	2
서울	0	0	0	0	0	0	0	0	0
부산	0	0	0	0	0	0	0	0	0
대구	0	0	0	0	0	0	0	0	0
인천	0	0	0	0	0	0	0	0	0
광주	0	0	0	0	0	0	0	0	0
대전	0	0	0	0	0	0	0	0	0
울산	3	1	2	3	1	2	3	1	2
세종	0	0	0	0	0	0	0	0	0
경기	0	0	0	0	0	0	0	0	0
강원	0	0	0	0	0	0	0	0	0
충북	0	0	0	0	0	0	0	0	0
충북 충남	0	0	0	0	0	0	0	0	0
전북	0	0	0	0	0	0	0	0	0
전남	0	0	0	0	0	0	0	0	0
경북	0	0	0	0	0	0	0	0	0
경남	0	0	0	0	0	0	0	0	0
제주	0	0	0	0	0	0	0	0	0

# 5. 바로 전 3년간 [산주막]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2	0	0	1	0	1
2022	1	0	0	0	0	1
2023	1	0	0	0	0	1

#### 6. [산주막]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산주막]외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은 없습니다.

#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 정기준

[산주막]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2023년 7	<b>가맹점사업</b>	사의 연간 평	]균 매출액		
지역	말 가맹점 수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sup>2</sup> 당	상한	면적 3.3m <sup>2</sup> 당	하한	면적 3.3m <sup>2</sup> 당	비고
전체	1	산출불가					_	
서울	0							
부산	0	K	OKEAFAIK	I KAUE MEI	DIATION AG			
대구	0							
인천	0							
광주	0							
대전	0							
울산	1	해당없음						* 5곳 미만
세종	0							
경기	0							
강원	0							
충북	0							
충남	0							
전북	0							
전남	0							
경북	0							
경남	0							
제주	0							

※ 가맹점 매출을 추산할 근거 자료가 없습니다.

#### 8. 해당 가맹사업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해당 가맹사업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 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1개	1,457일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해당 사항 없음

####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당사에서 바로 전 사업연도에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님	<b>シェl.</b>	수단 기간		단위: 천원, -	비고	
구분	구년 	기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U 1/
광고	(비공개)		_	_	_	_
판촉	_	_	_	_	_	_
합계	_	_	_	_	_	_

####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농협은행]에 예 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농협은행	화합로지점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 162	052-266-1736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농협은행] 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농협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

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산"을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농협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맹금 예치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0]회의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치 대상	의결번호 (사건번호)	위반법령	위반내용 (위반법조문)	조치일자	조치내용
-	-	-	-	-	

<sup>※</sup> 해당 사항 없음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산주막]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22,000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5,000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352,550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 22,000 ]		7-1		
가맹비	11,000	R계약A체결·후E 7일 이내	영업 A개시 의전 까지 계약 해지		반환시 당사에서 정한 기준의 위 약금을 공제
교육비	11,000	교육시작 7일 이전	교육시작 1일 이전에 계약해지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계약이행보증금	5,000	계약 후 14일 이내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27,000
가맹비	11,000
교육비	11,000
계약이행보증금	5,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34~35]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오픈시 필요항목을 제시한 내역이며, 반드시 지급해야하는 품목이 아닌 가이드용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m <sup>2</sup> 당 금액 <sup>®</sup>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간판		4,400	55	공사 3일전	제작 전 계약취소	
인테리어		198,000	2,475	공사 3일전	공사 전 계약취소	3.3㎡당 247.5만원
인테리어소품	자율선택	132,000	1,650	공사 3일전	공사 전 계약취소	
초도물품 비용		5,500 O KOREA FAIR	TRADE MED	계약시 IATION	계약 후 14일 이내 6 취소 시	가맹본부가 정한 품목과 수량을 구매 [첨부1 참조]
주방집기 및 홀집기		12,650	_	공사 3일전	시공 전	
총계	_	352,550	4,407			264.46㎡ (80평) 기준

[위 표의 금액은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인테리어 공사 관련, 당사의 설계 및 감리 대가로 3.3㎡ 기준으로 300천원을 내부 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 3일 이내에 당사에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VAT별도)]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당사 점포개발팀 (전화:052-221-9200)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9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9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산주막]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가맹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총액	계약금	중도금(1)	잔금
금액(천원)				_
납부일			8 14 -	_
비고	KOREA FAIR TRA	DE MEDIATION A	GENCY -	_

####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별도협의	지정일자		계약서 참조
판촉분담금	가맹본부	행사별로 분담 등	지정일자		계약서 참조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실비	교육 실시 3일전		교육 필요시 지급
영업표지	가맹본부	별도협의	간판 변경 전		부득이한 경우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14일 이내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점포환경개선 비용	가맹본부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 7일 이전		정보공개서 Ⅶ−1 참조
회계처리 비용	(협력업체)	업체협의			
POS 사용료	(협력업체)	업체협의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5%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가맹본부에 지급해야할 금전의 지급기한 경과 시)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 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3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 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 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사항 없음(직전사업연도 차액 가맹금 없음).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재고관리	실제재고 수량을 조사하여 장부상 재고와 비교	분기별 1회	문의: 관리팀 (052-221-9200)

회계처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월 1회	문의: 관리팀 (052-221-9200)
매출관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월 1회	문의: 관리팀
기글단어	회계 조사 실시	글 1의	(052-221-9200)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인테리어, 간판	해당시점에 협의하여 결정	공사 7일전	계약 취소 시	공사 시작시 반환불가	정보공개서 Ⅶ-1참조
주방집기 및 시설일체	해당시점에 협의하여 결정	공사 7일전	계약 취소 시	공사 시작시 반환불가	

[당사는 계약종료 시점에 점포 위치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가맹점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사가 판단하여 협의한 결과 가맹점도 이에 동의하면 점포 이전비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사 조치자항 AGENCY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 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 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 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 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 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 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산주막]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산]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보증금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일정범위 내 (10%~90%)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 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 1. 물품 구입 및 임차

1)귀하가 [산주막]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ㆍ하한(단위: 원)

수 버	품목(단위)	공급가격(	구브	
		상한	하한	<b>下</b> 证
_	-	_	_	_

※ 해당 사항 없습니다(직전 사업연도 필수품목 공급 없음).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당 브랜드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 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rd 칭	고). 게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고
명칭	관계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내용	미끄

_	_	-	_	-
	Ž	9	_	_

※ 해당 사항 없습니다.

####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당 브랜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	_	_	_	1	_
계 등					

※ 해당 사항 없습니다.

# 한국공정거래조정위

2) 당사가 당 브랜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사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관계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	_	_	-	-	-	
계					-	-

※ 해당 사항 없습니다.

####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산주막] 취급 전 메뉴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의반시 책임	비고
해당없음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 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해 물 류		별도공지	
전복문어연포탕	50,000	"	
문어연포탕	40,000	"	
전복조개탕	30,000	"	

돌문어	30,000	"	
오뎅탕	20,000	"	
		"	
과메기, 생굴	35,000	"	
두치삼합	30,000	"	
<u> </u>			
	25,000	"	
생굴	25,000	"	
굴전	25,000	"	
점심특선,해		"	
시래기꽁치찌개	25,000	"	
한우소찌개	25,000	"	
육회비빔밥	9,000	"	
산나물비빔밥	7,000	"	
한우국밥	7,000	"	
소고기한우콩나물국	6,000	"	
전		"	
산 모듬전	25,000	"	
소고기전	25,000	"	
명태전	20,000	"	
녹두해물빈대떡	20,000	"	
녹두빈대떡	18,000	"	
땡초해물파전	15,000	III	
김치해물전 🍑	15,000		
구 이 류	EA FAIR TRADE MEDIATIC	IN AGENCY	
모늠생선구이	25,000	"	
조기구이	25,000	"	
생가자미구이	25,000	"	
두루치기	25,000	"	
명태찜	25,000	"	
숯불매운닭발	20,000	"	
한치+명태포	15,000	"	
육 회 류		"	
참기름육회	25,000	"	
고추장육회	25,000	"	
뭉티기	25,000	"	
무침류		"	
골뱅이무침	25,000	"	
가오리회무침	20,000	"	
두부김치	20,000	"	
도토리묵	18,000	"	
찌 개, 탕 -		"	
간국	25,000	"	
등뼈찜	25,000	"	
주 류		"	

쌀동동주	8,000	"	
좁쌀동동주	8,000	"	
산더덕동동주	8,000	"	
우국생	4,000	"	
태화루쌀막걸리	4,000	"	
태화루	4,000	"	
대박막걸리	3,000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이차 어조 범이	동일한 업종	총 영업표지
동일한 업종 범위 ROREA FAIR TRADE	MEDIATI分的语向CY	계열회사
<ul><li>○ 각종 탕류, 찌개류를 주메뉴로 하는 한식업</li><li>○ 동동주와 막걸리를 주메뉴로 하는 주점업</li></ul>	산주막	없음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500m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 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 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어진기에 버린(시)이 기뻐스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 는 경우	(안) 작성 → 가맹 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	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 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자 동의 → 영업 지역 변경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mark>영</mark>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 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4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산주막'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당 브랜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영업표지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	-	_	_

※ 해당 사항 없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유통업체명	주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온라인	_	-	_	-
는 국무인 	_	_	_	_
홈쇼핑	_	_	_	_
전화권유판매	_	-	_	_

- ※ 해당 사항 없습니다.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해당 사항 없음.
-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sup>①</sup>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②
*2023	_	_	_	_

- ※ 가맹점 총매출을 추정할 수 없어 비율 산정 할 수 없습니다.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sup>①</sup>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sup>②</sup>	
*2023	0%	0%

- ※ 상품이 가맹점과 직영점에서 공통으로 판매되므로 가맹점에서만 판매되는 오프라인 전용상품은 없습니다.
- ※ 가맹본부가 온라인에서만 판매하거나 가맹본부가 온라인 플랫폼에만 공급하는 상품은 없습

니다.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 연장 · 종료 · 해지 · 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산주막]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 3 ]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 3 ]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 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 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 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_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_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36조 ①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6조 ①항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36조 ①항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36조 ①항
○ [산주막]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36조 ①항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36조 ①항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0	가맹점사업자가 ( 12 )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상품 등에 관한 대금 등의 지	37조①항
	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3/51/3
0	가맹점사업자가 2회 이상 정기납입경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37조①항
0	가맹점사업자가 정기납입경비의 산정을 위한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	37조①항
	비율을 3회 이상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31519
0	가맹본부의 품질관리기준을 ( 12 )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37조①항
0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점포 운영을 3일 이상 방치하는	37조①항
	경우	313118
0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7조①항
0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 제5항에 의한 노후 점포설비의	37조①항
	교체 · 보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313119
0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고 상당한	37조①항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3177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ul><li>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 된 경우</li></ul>	37조 ②항

0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37조 ②항
0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37조 ②항
ブレ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37조 ②항
0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7조 ②항
0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 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 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 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 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37조 ②항
0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37조 ②항
0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37조 ②항
0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37조 ②항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계약의 갱신의 경우	36조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개인 사정 등으로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새로운 가맹점사업자를 찾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시 사들여 직 영점 체제로 운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매 조	건	환매 절차	비고
○ 별도학		가맹점사업자가 소정의 양식을 갖추어 가맹본부에 환매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현장조사 포함, 20일 가량 소요) → 환매 여부 통지	문의: 관리팀 (052-221-9200)

####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 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 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을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그 무 뭐라이는	가맹점사업자(법정대리 인)가 서면으로 상속,대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리행사,업무위탁 신청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	
업무위탁	본부 승인시 가능	_	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 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국내에서 귀하가 [산주막]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ul><li>○ 각종 탕류와 찌개류를 주메뉴로 하는 한식업</li><li>○ 동동주, 막걸리를 주메뉴로 하는 주점업</li></ul>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무이 과리티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슈(제한FAIR TRADE MEDIATION AGENCY

당사는 [산주막]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24시간	연중무휴	문의: 관리팀 (052-221-920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1시부터 오전 6 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6개월간 영업손실이 발 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 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 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5명 이상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 • 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매장 청결(4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2회/월	본부 관리팀	
친절도(5항목)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2회/월	본부 관리팀	
품질 관리(7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2회/월	본부 관리팀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산과 귀하가 각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산주막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비율	분담 절차	비고
	성격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
광고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전체 행사	상품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광고비의 30%	광고비 7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산정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할인행사	할인금액 (소비자가) 50%	할인금액 (소비자가) 50%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시행 → 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판촉행사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70% 이상의 동의시 전체 적용
판촉행사	증정행사	증정상품 출하가 50%	증정상품 출하가 50%	"	"
	팜플렛 등 제작	판촉물 제작비용 50%	판촉물 제작비용 50%	"	"
	기타 개별행사	행사에 따	라 유동적	n	n,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하게 필요한 철차는 없습니다.]

####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당사의 영업비밀은 한국특허정보원의 영업비밀 원본 증명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 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 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7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ul><li>전화문의 접수</li><li>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li></ul>	D-47	
사업 설명·상담	<ul><li>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li><li>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li><li>가맹희망자 상담</li></ul>	D-46~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12~13쪽 참조]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가맹금 예치	- 농협은행에 가맹금 예치	D-29(1일)	
점포실측/설계	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5(2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4(3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 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 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

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등의 노후화가객관적으로 안정되는 경우이 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인하여 가빵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용 ○인테라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 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는 점포환경개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 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시절자>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총 부담액의 40%)	○점 보는 이 이 한 시 이 한 시 이 한 이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개점행사비	해당없음				
판촉장려금	"				
판촉지원	"				
판매용 집기 무상대여	"				
반품지원	"				

####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 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AGENCY	가맹본부 부담	문의: 관리팀 (052-221-9200)
가맹점사업 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 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 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 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 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 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 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 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관리팀 (052-221-9200)

####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산주막]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지 않습니다.

####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_	_	_	_	-	-

※ "해당없음"



#### W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산주막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기본 교육	운영 및 음식조리교육 직원관리 및 서비스교육	매장실습교육	가맹계약 체결 후 오픈전 7일까지	필수 교육
정기 교육	신메뉴 조리 종업원 관리 실무 등	실습교육	별도 공지	년 1회 필수 교육

####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산주막]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 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기본 교육	5일(5시간/일)	11,000	최초 계약시 이수 경력에 따라 조정가능
정기 교육	1일(최소 2시간)	실비	년 1회 일정은 별도 공지함
안국공정거래조정원			

# 3. 교육·훈련의 주체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4장 19조에 따라 15일 내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기한내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4장 19조에 따라 15일 내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여받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울산	달동 직영점	울산광역시 남구 달삼로 18, 1층(달동)
2	울산	삼산 직영점	울산 남구 남중로80번길 26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5년 2개월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정거라조정원미교
576,076 KOREA FAIR	IRADE MEDIATION AGENCY ※ 손익계산서 상 매출 기준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관리팀(052-221-9200)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첨부 1 : 초도물품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첨부 2 : 주방집기 및 홀집기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첨부 3 : 인테리어 소품 및 기타 집기류]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첨부 4: 재무 증빙 자료]

가맹본부(달동 직영점겸) 2023년, 2022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본부(달동 직영점겸) 2022년, 2021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삼산 직영점 2023년, 2022년 매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삼산 직영점 2022년, 2021년 매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08.1.31.>

가맹금예치신청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지 제2호 서식]

가맹희망자 인근의 가맹점사업자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지 제3호 서식]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 본 확인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당사자가 1부씩 보관합니다.

가맹본부용

정보공개서 제공 및 인근 가맹점현황 제공확인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본 확인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당사자가 1부씩 보관합니다.

가맹희망자용

정보공개서 제공 및 인근 가맹점현황 제공확인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